



제438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군사 대피시설 설치 의무화 및 예산 편성 근거 마련〉

■ 강선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118호)

2026. 8.

국 방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문 성 환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건축등 승인 시 군사 대피시설 세부계획 제출 의무화	2
2. 군사 대피시설의 설치 현황 실태조사 및 예산 편성 근거 마련	5
※ 참고자료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17087호, 강선영의원 대표발의) 신·구조문대비표	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강선영 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6. 2. 26.
3. 회부연월일 : 2026. 2.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자연재난의 위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군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피시설의 설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설치 의무와 예산 편성의 강제성이 미흡하여 시설 확보에 한계가 존재함.

이에 국방·군사시설의 사업시행자가 건축등의 승인을 받을 경우 군사 대피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건축등의 세부계획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방·군사시설의 실태조사 결과 군사 대피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된 시설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관련 예산을 편성하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안보 환경과 재난 위협 속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14조의3제3항).

Ⅲ. 검토의견

1. 건축등 승인 시 군사 대피시설 세부계획 제출 의무화(안 제8조제1항)

☐ 개정안은 국방·군사시설¹⁾의 사업시행자가 건축등의 승인을 받을 경우 군사 대피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건축등의 세부계획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조(국방·군사시설의 건축등의 특례) ① 국방·군사시설의 건축·축조·대수선·용도변경 또는 해체(이하 “건축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사업시행자는 「건축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은 제외한다), 제14조, 제19조, 제20조, 제29조제1항, 제83조 및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u><후단 신설></u> ② ~ ⑤ (생략)	제8조(국방·군사시설의 건축등의 특례) ① ----- ----- ----- ----- ----- ----- ----- ----- ----- . 이 <u>경우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 대피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건축등의 세부계획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② ~ ⑤ (현행과 같음)

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국방·군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

나. 국방·군사에 관한 연구 및 시험 시설

다. 군용 유류(油類) 및 폭발물의 저장·처리 시설

라. 진지(陣地) 구축시설

다. 군사 목적을 위한 장애물 또는 폭발물에 관한 시설

바.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부대시설(部隊施設)과 그 구성원·군무원·가족의 거주를 위한 주택시설 등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사. 그 밖에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복지·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 군인의 생명 및 안전 보호와 관련된 시설은 방호시설²⁾과 일반 군사시설 내 대피장소³⁾로 구분되는데, 이 중 일반 군사시설의 경우 현재 각군별로 작전계획에 따라 지하실, 다목적실, 지상 1층 내 사무실 등을 대피장소로 지정하여 운용 중임.

□ 최근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는 한편, 기상이변 등 자연재난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군인의 생명·안전을 보호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국가가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책무가 있고, 군인의 안전 확보는 전투력 유지와도 직결되므로 대피시설의 설치 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국방·군사시설은 부대별 임무와 작전계획에 따라 그 성격과 운용 방식에 차이가 있는바, 부대의 임무·성격이나 작전계획과 무관하게 모든 국방·군사시설에 상시적인 대피시설을 일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방호시설은 군사시설 중 방호등급(특급/1~3등급)을 부여받은 시설로서, 적의 무기 체계, 종류 및 타격 조건 등 적 위협 분석을 통해 방호대상 시설의 중요도, 방호요구수준 등을 고려하여 방호등급을 분류함.

3) (육군) 주둔지 단위로 대피공간 지정(지하 보일러실, 다목적실, 1층 창고 등)

(공군) 단위부대별 지하 PIT실 또는 지상 1층 내 사무실과 복도를 대피장소로 지정

(해군) 대피인원 위치 기준 667m 이내 시설(작전지휘시설, 터널, 콘크리트 건물 등)의 미사용 격실, 지하실을 대피장소로 지정

□ 아울러 개정안은 군사 대피시설의 설치·현황 조사 및 예산 편성의 근거를 두면서도, ‘방호성능 및 안전에 관한 기준(안 제14조의3제3항 제2호)’⁴⁾을 언급하고 있을 뿐, 그 밖에 군사 대피시설의 개념·범위 및 설계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대피시설의 의무적 설치에 관해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한정된 국방예산을 고려할 때 모든 군사 시설에 방호성능을 갖춘 대피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제한되므로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법 개정보다는 실무적으로 임무수행 여건상 일시적 대피시설이 필수적인 경우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는 방안으로 보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임.

4) **개정안 제14조의3(실태조사 등)**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생략)

2. 군사 대피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된 **군사 대피시설이 방호성능 및 안전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시설의 설치 또는 성능보강을 위한 예산의 편성

2. 군사 대피시설의 설치 현황 실태조사 및 예산 편성 근거 마련 (안 제14조의3제2항·제3항)

□ 개정안은 실태조사 항목에 군사 대피시설의 설치 현황을 추가하고, 그 결과 대피시설이 미설치되었거나 방호성능·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시설의 설치 또는 성능보강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함(안 제14조의3제2항제5호 및 제3항).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3(실태조사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략) <u><신 설></u> 5. (생략)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국가가 국방·군사시설로서 사용·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사용권 등 권원(權原)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14조의3(실태조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u>군사 대피시설의 설치 현황에 관한 사항</u>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③ ----- ----- <u>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u> -----. 1. <u>국가가 국방·군사시설로서 사용·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사용권 등 권원(權原)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u>

현행	개정안
<신설> ④ (생략)	2. <u>군사 대피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된 군사 대피시설이 방호성능 및 안전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시설의 설치 또는 성능보강을 위한 예산의 편성</u> ④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14조의3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2년마다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및 이용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방호시설 및 대피시설의 설치 현황에 관한 사항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실태조사 등) ① 국방부장관은 2년마다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및 이용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유지에 설치된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사항
2.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된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사항
3. 유휴 국방·군사시설의 현황에 관한 사항
4. 이전 사유 및 추진 경과 등 국방·군사시설의 이전 현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국가가 국방·군사시설로서 사용·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사용권 등 권원(權原)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실태조사와 공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에 개정안은 군사 대피시설의 설치 현황을 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그 결과를 대피시설의 설치 또는 성능보강을 위한 예산편성과 연계하려는 것으로, 대피시설 확보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 ☐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각군 부대별 작전 수행여건을 고려하여 대피시설 설치 방안을 단계적으로 보완한 후 실태조사의 필요성 및 조사 대상 범위 등을 세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 ☐ 참고로, 이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발의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7087호, 강선영의원 대표발의)⁵⁾의 심사경과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음.

문 의 처
02)6788-5309

5) 참고자료 참조

※ 참고자료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17087호, 강선영의원 대표발의)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17조의4(안전한 복무환경의 보장)</u> <u>국가는 군에 대한 침투·도발</u> <u>이나 그 위협 및 재난으로부터</u> <u>군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u> <u>위하여 군인 대피시설을 설치</u> <u>하는 등 안전한 복무환경을 보장</u> <u>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